

# 특허법원 국제센터 Advisory Board가 뽑은 2025 International IP Landmark Cases 8

2025. 12. 31.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1. 판결 선정 경위

### 가. Advisory Board Meeting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이하 “국제센터”)는 2025. 7. 미국, 유럽, 아시아 각 대륙에 속한 법관, 교수, 변호사, 국제기구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Advisory Board를 구성
- 2025. 12. 11. 첫 Advisory Board Meeting 개최
- Board Member들은 법관들은 각 국가에서 Landmark Case 2개를 선정하여 발표

### 나. 판례 선정 및 발표 법관

#### □ 미국(일리노이)

- Judge Edmond E. CHANG

-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sup>1)</sup>

#### □ 독일/이탈리아 (뮌헨/밀라노)

- Judge Anna-Lena KLEIN

- Milan Section (Central Division), UPC; Regional Court Munich I, Germany

#### □ 일본 (도쿄)

- Former Chief Judge Makiko TAKABE

1)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로, 2023년 5위, 2024년 2위 연방법원임

- [前 IP High Court of Japan; 現 Nishimura & Asahi 변호사]

■ 한국

- 정택수 고법판사 [대한민국 특허법원]
- 이혜진 고법판사 [대한민국 특허법원]

## 2. 미국 (연방대법원 및 CAFC) - Judge Admond E. CHANG<sup>2)</sup>

■ 1. *Amgen Inc. v. Sanofi*, 598 U.S. 594 (2023)

- 미국 연방대법원은 매 회기마다 특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음. 미국 연방대법원이 특허 사건에 대해 가장 최근에 내린 판결은 2023년도에 있었으며, 해당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님
- 글로벌 제약업계의 두 거인인 Amgen과 Sanofi社 간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Amgen社의 의약품(drug)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음
- Amgen社는 환자들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항체를 구성요소로 하는 특허를 받음. PCSK9 단백질(인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백질임)은, LDL과 결합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세포 내로 유입하여 전체적인 혈중 LDL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LDL 수용체와 다시 결합하여 LDL 수용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단백질임. 위 항체의 작용기전은 이러한 PCSK9 단백질에 자신을 결합시켜 LDL 콜레스테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임
- Amgen은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위 단백질이 LDL 콜레스테롤 추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항체의 전체 속(屬 [genus])을 구성요소로 청구함
- 특허 출원 시, Amgen社는 26개의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을 자명하게 밝혔으나, 그 이외의 항체에 대해서는 단 두 가지의 연구 방법만을 명세서에 기술함. 추후 Amgen社는 Sanofi社를 특허 침해로 소송함. 이에 대해, 미국 연방지방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mgen社가 35 U.S.C. § 112(a)의 실시가능성 요건 (enablement requirement)

2) 이하 내용은 최대한 발표 법관이 한 발언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문맥이나 사전 배포 자료를 토대로 일부 보충하였음

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결함. Section 112(a)는 특히 명세서가, 해당 분야에 숙련된 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발명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발명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함을 요구함

-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Amgen社가 모든 항체의 클래스(class)를 실시가능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중요한 의의가 있음. Amgen社는 모든 항체의 클래스를 기능에 의해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다만 두 가지의 연구방법을 제시하였을 뿐임. Amgen社는 그 두 연구방법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설명을 기술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두 연구방법이 본질적으로는 무작위적인 시행착오(random trial and error) 방식의 연구방법일 뿐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항체의 클래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해당 분야에 숙련된 이들이 고통스럽게 노력해야 하는 이러한 방식의 실험은 해당 발명이 실시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제약 분야의 특허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특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임. 발명자들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선행발명의 권리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발명을 기능에 의해 정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임. 왜냐하면 발명을 기능에 의해 정의할 때 해당 발명의 권리의 폭이 확대되기 때문임. 미국 연방대법원의 본 판결은, 발명자들의 이러한 경향에 대항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과 같음

## □ 2. *Thaler v. Vidal*, 43 F.4th 1207 (Fed. Cir. 2022)

- 해당 사건은 2022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다루어진 것임. 해당 사건의 간략한 요지는 다음과 같음. 특히 신청자는 발명자의 이름에 자연인의 이름 대신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됨”이라고 기재하였고, 특히 신청 대상인 소스 코드 집합(a collection of source code)이 전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인정함. 즉, 특히 신청자 본인이 해당 발명의 진보성 등에 관해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매우 분명히 밝힌 것임
- 이에 대해 미국 특허청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인간을 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failure to list a human person as an inventor) 사유로 특허 신청을 거절하는 심결 및 판결을 내렸으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심결 및 판결을 확정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에 있어서, 미국 특허법은 특허 신청 시 신청자가 자연인일 것을 요구함을 언급하였음. 즉, 발명자로서 AI만 언급하는 것은 미국 특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임.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미국 특허법 규정의 용어(terminology)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았음

- 만일,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하거나 또는 AI가 사람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람과 AI가 공동 발명자인 경우, 세계의 각 나라들이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임. *Thaler v. Vidal* 판결 직후, 당시의 미국 특허청 디렉터는 공동 발명자 기준(joint inventor standard)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림(issued a guidance). 공동 발명자 기준은 1998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Pannu v. Iolab Corp.* 판결에서 결정되어진 매우 잘 알려진 기준으로서, 이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이 해당 발명에 있어서 상당한 공헌(significant contribution)을 하는 것이 요구됨
-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며(executive agency), 지난 해 대통령 선거 및 올해 9월 미국 특허청 신규 디렉터의 취임 이후<sup>3)</sup>, 신임 디렉터는 2025. 11. 28. 새로운 지침을 내려 이전 지침을 무효화함. 이번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어떤 발명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해당 발명을 고안해내기만 한다면 충분함. 이는 분명히, 발명에 있어서 AI 사용을 허락해주는 더 폭넓은 기준임. 이번의 새로운 지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어올지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 지침이 발명에 있어서 더 많은 인간 발명자(human inventors)들이 더 작은 역할을 하고 AI에 더 의존하면서도 여전히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락해줄 것이라는 점임

### 3. 유럽 (UPC) - Judge Anna-Lena KLEIN

#### □ 1. *BSH Hausgeräte v Electrolux*, CJEU, 25 February 2025, C-339/22

- 본 사건의 판결은 EU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의해 내려졌으며, EU 사법재판소는 UPC 및 EU 구성원 국가들의 법원(national courts)에

3) 미국 특허청 Director는 대통령 지명 및 상원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됨.

### 큰 영향력을 가짐

- 독일에서 개최되는 각종 콘퍼런스에서, *BSH Hausgeräte v Electrolux* 사건이 늘 회자되고 있음
- 본 사건은 초국가적 관할권 및 관련]사건들(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cases)을 다루고 있음<sup>4)</sup>
- 유럽에는 Brussels regulation이라는 것이 있음. 그 중, 한 특정한 법규는,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은 그 특허권을 부여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sup>5)</sup>”고 규정함
- 그런데 문제는, 특허 침해 소송 간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슈가 항변(defense)으로 제기되는 경우, 유효성 효과(validity effects)에 근거하여 당초 침해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국제 관할권을 잃게 되는지 여부임
- 이에 대해 EU 사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힌 것은, 특허 침해로 인해, 예를 들어 피고의 거주지에 근거하여, 특정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시, 피고가 항변(defense)로서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문 삼더라도 (if validity is raised or is questioned) 당초 법원이 해당 관할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임
- 그러므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 이슈를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할 수 있음<sup>6)</sup>. 이는 독일 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의 프랑스 특허 침해, 스페인에서의 스페인 특허 침해에 있어서도 동일함
- 즉, 이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상점”과 같은 해결책 (“one stop shop” solution)이라고 할 수 있음. 즉 당사자는 독일 법원에 가서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침해에 대해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해당 침해에 대해 독일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법, 프랑스법 등을 검토해야(look into) 한다는 점임

4) 이 판결의 핵심적인 판단 사항: 원고는 피고가 거주한 회원 국가의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forum rei, Art. 4 Brussels Ia regulation), 이때 그 침해가 다른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지와 무관하게 다른 해외 국가의 특허의 침해에 관한 부분도 그 법원에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Judge Klein 제공 자료집 1면

5) If the validity of the patent is concerned, then validity of the patent can only be decided of the court who granted the patent. [화자 원문]

6) So, the court may not decide on validity issues; but it may decide on the infringement case. [화자 원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며, 폭넓은 파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음. EU 사법재판소의 많은 판결들이 UPC 및 EU 회원국 국가들의 법원들(national courts)에 의해서 인용되었음
- [그 예시로] Regional Court Munich I 은 20개국 이상과 관련된 특히 침해와 관련하여 예비적 금지명령(PI [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림
- 또한, 어떠한 것을 수출함으로서 발생하는 특히 침해와 관련된 사건(case)도 있음. 즉, 이처럼 폭넓은 파장을 미치는 결과(wide ramifications)가 있었음
- UPC 만하임 분원(Local division Mannheim of UPC)은 UPC의 이러한 규정(provision) 또는 판단, 그리고 EU 사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argumentation)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함. 즉, 초국가적인 관할권(international jurisdiction)이 피고의 법적 주소지(seats)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침해가 이루어졌는가에 근거한다는 것임
- 즉, 어떠한 침해가 독일에서 발생하였을 시, EU 사법재판소의 본 판결, 또는 주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침해들에 대해서도 판결이 가능함. 그러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며, 한 번에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one stop shop”)과 같은 것임

**□ 2. Local Division Mannheim, UPC, 30 September 2025,  
UPC\_CFI\_936/2025**

- 본 사건에서, UPC 만하임 지역법원(Local Division Mannheim, UPC)은 反 잠정적 라이선스 금지명령(Anti Interim License Injunction [AILI])을 내림
- 해당 사건의 맥락은 다음과 같음. 독일 법원은 FRAND 요율을 정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다른 해외 법원들은 FRAND 요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 무방하다고 여김
- 영국 법원에서는 FRAND 요율을 결정받을 수 있으며, 또 잠정적 라이선스(interim license) 또한 받을 수 있음. FRAND 또는 RAND의 맥락에서 영국을 논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willing licensee라면 잠정적 라이선스(interim license)를 취할 것임. 몇몇의 판결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근거는, 잠정적 라이선스(Interim license)에서 정한 요율은, 당사자 본인들이 받아들일만한 FRAND 요율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임

- 본 사건에서 UPC 만하임 분원은, 잠정적 라이선스 절차(interim license proceeding)가 특허권자가 UPC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임. UPC 만하임 분원은 사용자가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에 잠정적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를 허락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잠정적 라이선스 허용 여부에 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은 영국 법원이 unwilling licensee가 UPC에서 자신들의 권리 를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임<sup>7)</sup>
- 이것은 몇 년 전에 보았던 소송금지명령, 反反송금지명령, 反反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anti anti... suit injunction)의 상황과 동일한 것이며, FRAND 요율 설정이라는 맥락 하에 있는 것임
- 현재 본 사건의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음. 첫 번째 판결은 UPC 만하임 분원에 의해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만(ex parte) 내려졌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가 있었으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본 사건에서 UPC 만하임 분원이 매우 분명히 밝힌 것은, 이것은 매우 특정한 (specific) 사건이며, 관련된 특정한 고려사항들(specific considerations)을 깊이 들여다 보고 있고, 영국 법원의 관할권을 간섭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점임
- 발표 후 follow-up 질문: EU 사법재판소가 “one stop shop solution” 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특허 무효를 항변(invalidity defense)으로 제기한다면... 사실 한국에서는 침해 사건 심리 도중에 특정 특허가 유효 또는 무효인지를 판결할 수 없음. 그러나 그 특허가 무효인 것이 도중에 발견되면, 판사는 이를 권리 남용이라고 판결할 수 있고, 해당 당사자의 청구는 기각됨
- 질문에 대한 답변: 독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 두 갈래로 갈라진 상황(bifurcated situation)임. EU 사법재판소 (CJEU)의 언급에 따르면, 어떤 법원이 보기에 어떤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면,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류할 수 있음. 그러므로 해당 법원은, 해당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관여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임

7) Judge Klein 자료 기재 원문: “The LD states that, against this background, the UK jurisprudence of interim licenses can de facto act as a prohibition on litigation before the UPC.”

#### 4. 일본 (대법원 및 지재고재) - Former Chief Judge Makiko TAKABE

##### ■ 1. Supreme Court in Japan, 2023(Ju)14, 15, 3 March 2025

- Comment distribution system case라고도 불리는 본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함. 쟁점이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상 공유 서비스를 위해 미국에 위치한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본의 사용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일본에 위치한 터미널들로 배포하는 행위는, 일본 특허법 2조 3항 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한 공급(provision through a telecommunications line)”에 해당됨
- 속지주의의 원칙(principle of territoriality)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특허권이 있는 발명의 일부가 일본 영토 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일본 특허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임. 오늘날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속지주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로 귀결될 것임. 이 판결은 속지주의의 원칙이 융통성(flexibly) 있게 적용되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줌

##### ■ 2.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in Japan, 2024(Gyo-Ko)10006, 30 January 2025

- DABUS case라고도 불리는 본 사건에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함. Patent Cooperation Treaty(PCT)하에서 원고가 일본 특허청에 신청한 국제 특허 출원 신청에 대해, 특허청은 일본 특허법 제184조의5 제2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법 제184조의5 제3항에 따라 ‘출원을 각하하는 처분(특허거절 결정이 아닌 일반 행정처분)’을 함. 이에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함.
- 해당 특허 출원을 신청한 원고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발명자 이름란에 “DABUS, 본 발명을 스스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이라고 기입함.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일본 특허청의 출원 각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도쿄지방재판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본 판결에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일본 특허법 하에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발명은 자연인들이 발명한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현행 일본 특허법 하에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생성한 AI 발명들은 특히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시함

-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서, AI에 의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발명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입법 분야를 포함하여, 고찰이 필요한 중요한 이슈임

## 5. 한국 (특허법원) Judge Taeksoo JUNG & Judge Hyejin LEE

### 가. High Court Judge Taeksoo JUNG

#### □ 특허법원 (제3부) 2025. 1. 16. 선고 2023허13599 판결 [정택수 고법판사]

-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속하지 않는 주선행발명에 의거하거나 여기에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함: 먼저 주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해당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용의 것인지의 여부 및 둘째로 주선행발명에서 해당 기술적 문제를 아우르는 발명 전체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는 기술구성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것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볼 만큼 주선행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해당 발명에서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와 가까운지의 여부임. 이와 달리 해당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됨
- 이 판결은 발명과 주선행발명 간의 기술적 도전과제의 유사성을, 사후적 판단이라는 편견을 완화하기 위한 부차적인 고려사항으로 도입한다는 점에 있어서 깊은 합의를 담은 중차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해당 판결은 대상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다른 선행기술을 주선행발명으로 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음

## 나. High Court Judge Hyejin LEE

### ▣ 특허법원 (제2부) 2025. 11. 12. 선고 2024허14780, 2024허14803 판결

- 리모와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등록디자인인 이어폰 케이스에 대한 국제 분쟁을 다룬 본 사건은 국제 재판으로 심리가 이루어짐. 선행 디자인은 독일 기업인 RIMOWA가 만든 여행 가방임. 독일의 RIMOWA 측은, 통상의 기술을 가진 디자이너라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이어폰 케이스의 디자인을 어려움 없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를 근거로, RIMOWA측은 분쟁의 대상인 해당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RIMOWA 측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림. 이에, 해당 등록디자인의 소유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함
- 해당 사건의 초반부터 특허법원 재판부는 외국 당사자에게 절차협의 및 통역 지원이라는 편의를 제공함. 절차협의(Case Management)를 통해 당사자들은 사전에 해당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일부 사항들에 관해 서로 논의 및 합의할 수 있으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해 더 잘 예측할 수 있음
- 절차협의를 통해 당사자들은 희망하는 변론기일 횟수, 선고일 및 변론 간 PPT 사용 여부, 전문가증인의 참여 여부 등과 같은 이슈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음. 당사자들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고지하면, 재판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심리 절차에 최대한 반영하게 됨
- 리모와 사건 재판 시, 현장 및 실시간 온라인 화상 참여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함. 양 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들이 법정 현장에 출두하였으며,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독일에서 RIMOWA社의 법률상 대리인이 함께 참여함
- 또한 두 명의 동시 통역사가 법정 내 통역 부스에서 영-한, 한-영 통역 임무를 수행 하였으며,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화된 한국어를 화면에서 영문 자막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외에도, 법원은 해외 당사자에게 국문 판결문의 영문본을 제공함

- 본 사건의 핵심 이슈는 통상의 기술을 가진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인 여행 가방 디자인으로부터 이어폰 케이스의 디자인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임.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범주의 물품 간 디자인 전용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가 중심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본 판결에서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선행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으며, (1) 두 물품이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 (2) 두 물품의 기본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한지, (3) 디자이너들이 보통 다른 분야의 물품들에서 영감을 얻는지와 같은 요인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비록 물품이 서로 다른 종류라고 할지라도,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서 쉽게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새 디자인은 창작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리모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리모와 스타일 (줄무늬 형태 有)”이라고 자주 불리던 선행디자인이 작은 수납용품, 보호용 수납용품, 이어폰 케이스와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에 사용되어져 왔음을 또한 강조하였음
-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 두 디자인은 지배적이고도 전체적으로 공통된 특징들을 공유함. 둘째, 추정되는 차이점들은 단지 상업적 또는 기능적 변형이거나 사소한 변형에 불과함. 셋째, 등록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리모와 디자인에 비추어보았을 때 쉽게 창작될 수 있으므로, 해당 등록 디자인은 무효가 되어야 함
- 리모와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먼저, 이는 한국의 지식 재산권 소송의 국제화에 있어서 중대한 진보임. 리모와 사건은 한국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최초로 외국 당사자의 실시간 원격 참여를 허락해준 사례임. 또한, 특히 법원은 동시 통역, 실시간 영문 자막, 맞춤형 절차협의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높은 접근성과 절차적 만족감을 보장해주었음. 둘째로, 본 판결을 통해 창작비용이성 평가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세움. 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일부 조건 하에서, 어떠한 디자인에 대한 창작비용이성을 평가할 때 다른 범주의 물품에 사용된 선행 디자인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이는 추후의 사건들에서 창작비용이성 평가 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줌

## 6. 향후 계획

- ▣ 특허법원 국제센터는 위 판결들을 '(월간) 해외 IP 재판실무'의 분석 대상 사례로 삼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재판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국의 법관들에게 공유할 계획임. 끝.